

사회서비스 이용절차 및 이용자 준수사항

사회서비스 이용절차		이용자 준수사항 등
1. 서비스 신청	<p>가. 신청 및 접수 : 읍·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구비서류 서비스별 확인 필요>> * 건강보험증 : 행복e음으로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권자 : 이용자 또는 보호자,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 (위임장 지참) <p>나. 신청기간 : 연중상시(구군별 상이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자 및 재정상황에 따라 구군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 - 유사서비스 중복이용 불가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내용 숙지
2. 이용자 선정	<p>다.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에서 주소지로 배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부담금(모든 서비스에 반드시 있음) 및 제공기관 정보 확인
3. 서비스 계약	<p>라. 제공기관 선택 후 방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통지서 및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로 기관 확인 (www.socialservice.or.kr) ② 부산지역사회서비스 홈페이지(www.ssbns.or.kr)를 통해 기관 정보 검색 및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사업별, 기관별 검색 * 제공자 등록된 기관에서만 서비스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기관 관계자 초기상담 - 서비스 제공 계획서(내용, 횟수 등) 확인 - 서비스 제공 계약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4.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수령	<p>마. 바우처 카드 수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행복카드 신청 후 수령 - 희망e는 카드 기 소지자는 기존카드 이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카드 보관 * 타인 소지 및 대여, 제공기관이 보관 할 수 없음 (관련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
5. 본인부담금 사전납부	<p>바. 서비스 가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모든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받기 전 본인부담금 납부 (계좌이체 원칙, 현금 납부 시 영수증 수령)
6. 서비스 이용	<p>사. 서비스 제공 계약 기준으로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정보(내용, 횟수, 금액 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검사 실시 - 서비스 제공기록지 서명 (매회) - 국민행복카드(바우처) 결제(매회)
7. 서비스 종료	<p>아. 서비스 지원기간 만료 시 자동종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로 추가구매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검사 실시 및 이용자 상담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 2개월 연속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미결제 포함)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타 구·군으로 이사를 할 경우, 이용 중인 모든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월단위로 변경하고, 최소 7일전 기존 제공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권을 타인에게 판매, 대여하거나,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금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

- ☞ 서비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바랍니다.
- ☞ 부산지역사회서비스는 www.ssbns.or.kr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2018년 부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서비스별 기준정보안내

지금 내게 필요한 사회서비스가 여기!



사업 코드	사업명	월 서비스 가격(천원)			바우처 생성정보		대상자 선정기준(소득, 연령, 가구특성 모두 충족해야 함)				서비스 내용 및 방법 * 동일 사업코드 내 1일 서비스 총량은 2회 이하만 허용				구비서류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행복e음 업로드)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지원 기간	생성 주기	소득 (기준 중위소득)	출생 연도 (만나이)	가구특성 및 우선순위		서비스 내용	제공 장소	제공 주기	제공 시간 (회당)	
120103	동화야 놀자 (스토리텔링)	①64 ②90	①54, 44, 32 ②75 60 50	①10 20 32 ②15 30 40	12개월	1개월 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①(2-8) 2010 ~ 2016 (포함) 출생 아동 ②(2-4) 2014 ~ 2016 (포함) 출생 아동 및 부모	★ 등급기준 1. 유아단독형 ① 1등급: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이하 ② 2등급: 기준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③ 3등급: 기준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 2. 패키지형(유아+부모) ① 4등급: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이하 ② 5등급: 기준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③ 6등급: 기준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 * 중복이용불가: 시청각장애인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 ★ 우선순위 ① 다자녀(3인이상), ② 유치원 및 어린이집 미이용자, ③ 연령(유아단독형-고연령순: 만8세,만7세...만2세, 패키지형-고연령 순: 만4세,만3세,만2세), ④ 한부모, ⑤ 맞벌이, ⑥ 다문화 * 2번 우선순위의 경우 영유아지원, 놀이학교 등의 사설 유아시설 이용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자로 간주	1. 유아단독형 ① 동화구연: 연령에 맞는 동화를 선택하여 구연, 행연(신체표현을 겸한 구연), 악연(음악 및 음률을 기미한 구연) 서비스 제공 ② 동화구연 연극: 인형, 그림, 막대, 완구, 손유희, 그림자 동화 등 연극 관람 및 참여, 역할극, 발표회 ③ 안전교육: 서비스 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관련 한 예방교육(화재, 지진, 응급재난상황 등) 2. 패키지형(유아+부모) ① 동화구연: 아동과 부모가 함께 하는 동화 구연, 행연, 악연 서비스 제공(부모가 가정에서 자녀를 대상으로 동화구연 등을 시연할 수 있도록 지도) ② 동화구연 연극: 인형, 그림, 막대, 완구, 손유희, 그림자 동화 등 연극 관람 및 참여, 역할극, 발표회 ③ 안전교육: 서비스 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관련 한 예방교육(화재, 지진, 응급재난상황 등)	기관 방문형	1.유아단독 (8인이하) 2.패키지 (12인이하) (부모포함)	1.2. ① 월4회 (주1회) 1.2. ② 분기1회 (연4회) 1.2. ③ 연1회	1-2. ①~③ 50분	
130103	해양역사 문화체험 아카데미	150	①135 ②120 ③110	①15 ②30 ③40	12개월	1개월 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7-15) 2003 ~ 2011 (포함) 출생자 or 초등 재학생 ~ 중학 재학생	★ 등급기준 1. 1등급: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2. 2등급: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3. 3등급: 기준중위소득 120%초과~150% 이하 ★ 우선순위 ① 다자녀(3인이상), ② 한부모, ③ 조손세대, ④ 연령(고연령 순: 만15세,만14세...만7세), ⑤ 맞벌이, ⑥ 다문화	1. 부산의 역사, 문화, 해양관련 기본과정: 부산의 역사, 문화, 해양이라는 3가지 주제로 사회성, 창의력, 리더십 증진을 위한 비전형성(지역의 향토적 주제로 서비스 운영, 지역의 특성 반영) 2. 부산의 역사, 문화, 해양 체험: 부산 지역의 역사, 문화, 해양 관련한 유적지, 박물관, 기념관 체험 및 부산의 인물, 스포츠, 문화 체험 제공 3. 안전교육: 서비스 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관련 한 예방교육(화재, 지진, 응급재난상황 등), 기존의 부산의 역사, 문화, 해양관련 기본과정	기관 방문형 (1~12인)	1. 월3회 (주1회) 2. 월1회 3. 연1회	1.120분 2.360분 3.60분		
160203	아동건강 관리서비스	85	①75 ②65	①10 ②20	12개월	1개월 마다	소득기준 없음	(5-12) 2006 ~ 2013 (포함) 출생자	★ 가구특성 1. 과체중아동(비만도 120% 이상) 또는 저체중아동(비만도 85% 이하) 2. 연령 대비 표준 몸무게 및 표준 키 미달자로 발달 지연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는 자 * 중복이용불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바우처 ★ 등급기준 1. 1등급: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2. 2등급: 기준중위소득 100%초과 ★ 우선순위: ① 의사소견서, ② 비만을 높은 순, ③ 저체중 심각수준 순 * 단, 비만을 및 저체중을 심각수준이 동일할 때에는 고연령 순, 다자녀(3인 이상), 한부모, 맞벌이 순으로 결정	1. 맞춤형 운동처방지도: 구기종목 등 유산소운동 2. 식생활 습관 교정지도 - 영양 및 식생활 습관 개선 교육 - 월별 변화정도, 권장식단, 부모협조 등의 자료문서, 가정통신문 등 제공 3. 안전교육: 서비스 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관련한 예방교육(화재, 지진, 응급재난상황 등)	기관 방문형 (15인이하)	1.월7회 (주2회) 2.월1회 3.연1회	1~3. 90분	의료기관, 보건소, 학교보건교사의 비만도 확인자료 (키, 몸무게 확인)	
011003	아동청소년 심리치유 서비스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180 - 270	①162 ②144 ③126 ④108 - 126 ④72 - 162	①18 - 54 ②36 - 96 ③54 - 126 ④72 - 162	12개월	1개월 마다	소득기준 없음	(18) 2000 (포함) 이후 출생자	1. 발달지연 ① 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진단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록 등이 있는 경우 ② 교육기관 교재(학교), 유아교육기관장, 어린이집 원장, 학교복지사, 학교 상담교사(특수교사, 특수반교사 포함), 워싱턴 및 위클래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추천하는 아동 중 발달검사(K-CDR-R, K-ASQ, K-DST, DEP, CBL, KPRC(K-CYP로 대체) 또는 효과성 검사도구(부산지침 참조, 예 언어발달척도, 인지기능검사 등) 결과(일반기관에서 실시한 검사결과지 포함)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검사결과지(작성기관 명시, 단순 검사지 제출이 아닌, 검사 결과에 따라 간단한 서비스 필요 사유 별도작성) 동시제출) => 즉, 추천서+검사결과지 또는 해석지 또는 분석지 동시제출 * ②의 추천서는 학교기관에 속한 아동 및 청소년(직접적으로 개입이 된 아동 및 청소년)에 한해 추천 가능(보호자 일시적 요청에 따른 추천 불가) * 단, 온라인 검사결과 제출 시에는 검사결과에 대한 소견이 반영되기에 검사 시행자가 작성하는 검사결과 해석지 및 분석지는 미제출 가능	1. 발달지연 - 발달기초: 기본적 대근육,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 언어발달: 의사소통 기능·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 초기인지: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 정서, 사회성: 기본적인 정서표현, 가족 및 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2. 문제행동 - 심리상담: 문제행동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회당 10분 내외) - 개인 맞춤형 • 놀이프로그램: 놀이를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발달 등 지원 • 언어프로그램: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 환경적 원인을 분석, 증상별 치료계획을 수립, 적절한 치료로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 능력 향상 • 인지프로그램: 아동의 발달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	기관 방문형 (1인원칙, 지원기간 3개월 이후 3인 이하 그룹 가능) * 안전교육 서비스 제공시 집단규모 10인 이내 가능	1~2.1인 (50분)/ 3인 이하 그룹(90 분) 3.연1회 3.50분	가구특성 적합 입증자료 (예산범위 내에서 1회 재평정)		

사업 코드	사업명	월 서비스 가격(천원)			바우처 생성정보		대상자 선정기준(소득, 연령, 가구특성 모두 충족해야 함)			서비스 내용 및 방법 *동일 사업코드 내 1일 서비스 총량은 1회분만 허용				구비서류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행복e음 업로드)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지원 기간	생성 주기	소득	출생 연도 (만나이)	가구특성 및 우선순위	서비스 내용	제공 장소	제공 주기	제공시간 (1회)	
250203	뇌에 기(氣)가 팍팍	160	①150 ②140 ③130	①10 (수급자:5) ②20 (수급자:10) ③30 (수급자:15)	12개월	1개월 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65) 1953 (포함) 이전 출생자	★ 등급기준 1. 1등급 :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 50%이하 2. 2등급 : 기준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3. 3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150%이하 * 중복이용불가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우선순위 ①1인가구, ②치매관련기관(보건소 등 의료기관, 치매지원센터 추천), ③자살위험군(정신건강증진센터, 임상심사자 추천 등), ④다복동사업(구군 희망복지지원단의 사례관리자 등) 등 담당자 추천, ⑤장애등록자(등록증), ⑥연령(고연령 순)	1. Alt 학습요법 : 치매예방 및 중증악화 예방을 위해 과학적으로 검증된 두뇌 활성화 인지건강 프로그램으로 학습요법 교재에 의한 1:1 맞춤식 읽기, 쓰기, 숫자계산으로 두뇌활성화 교육 2. 차문화 치료 : 차를 통한 정서기능 안정 및 상담 3. 택컬케어, 색종이접기, 회상요법, 치매예방체조, 레크레이션 중 택2 4. 안전교육 : 서비스 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관련한 예방교육 (화재, 지진, 응급재난상황 등) 또는 이용자 특성(노인질환 등)에 따른 안전교육 (낙상예방 등) 실시	재가 방문형 (원칙) + 기관 방문형 (허용) [1인원칙, 이용자의 사정·요청에 따라 3인 이하 소그룹 가능]	1~3.월8회 (주2회) 4.연1회	1~3.60분/3인이하 그룹(90분) 4.60분	가구특성 적합 입증자료
080603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160	144	16 (수급자:8)	12개월	1개월 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60) 1958 (포함) 이전 출생자 [의료급여 연계자 (55)1963 (포함) 이전 출생자]	1. 만 60세 이상인 자와 국가유공자(연령무관)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근골격계·순환계·순환계 질환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처방전 또는 진료확인서 등 (질병분류코드 G,M,I 및 R81, E10-15) 제출자 2.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포함) 제출, 연령무관) 3. 파킨슨씨병 환재(연령무관, 파킨슨씨 병 관련한 증빙서류 -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 우선순위 ① 1인가구, ② 의료급여 연계자, ③ M코드, ④ G, I코드, ⑤ R81,E10-15, ⑥ 장애인(파킨슨씨병 환자 포함), ⑦ 신규, ⑧ 연령순(80세~70세 범위내 고연령 순)	1. 근골격계·순환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서비스 제공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바닥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체형교정 등 개인맞춤형 안마서비스 2. 수기 안마 외 기타 기구 사용할 경우 시간은 회당 15분 내로 제한 3. 안마실, 안마시술소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해당	기관 방문형 (1인)	월4회 (주1회)	60분	가구특성 적합 입증자료 (예산범위 내에서 1회 재판정)
050903	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내나이가 어때서)	①70 ②100	①60 ②90	①10 (수급자:5) ②10 (수급자:5)	12개월	1개월 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65) 1953 (포함) 이전 출생자 [의료급여 연계자 (55)1963 (포함) 이전 출생자]	1. 보건소 노인체력측정 3개부문(근지구력, 유연성, 평형성) 검사결과 평균 4등급 이상인 자 또는 표준범위 외의 자 2. 신체건강 등에 의학적 이상소견이 있는 재의사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3. 체성분석(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일반기관 모두 포함) 또는 기초체력검사 결과 표준범위 외의 자 ★ 등급기준 1. 1등급 : 마루운동서비스 2. 2등급 : 수중운동서비스 ★ 우선순위 ① 1인가구, ② 의료급여 연계자, ③ 연령(80세~70세 범위중 고연령 순), ④ 연령(70~65세 범위중 고연령 순), ⑤ 신체질환자(의사 및 병원 진단·소견·진료확인)	1. 마루운동서비스 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 기본 : 유연성 및 근력 운동, 협동형 운동, 평형성 향상 운동 ② 건강상태 상담 및 건강교육 - 체성분 검사와 기초체력 측정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에 대한 상담 - 어르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관련한 교육 실시 ③ 발표회 또는 경연 - 실버로빅 등 제공 서비스에 대한 발표회 또는 경연 실시 ④ 안전교육 - 서비스 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관련한 예방교육 (화재, 지진, 응급재난상황 등) 2. 수중운동서비스 ① 수중운동 및 건강지원 프로그램 - 기본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 수중운동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및 심폐기능 향상 지원 ② 건강 및 영양교육 - 체성분 검사와 기초체력 측정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건강상담 (설문활용)을 실시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식생활 및 생활패턴 개선지도 (1회 서비스로 인정) ③ 안전교육 - 서비스 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관련한 예방교육 (수중 안전사고, 화재, 지진, 응급재난상황 등)	기관 방문형 (1~25인)	1.마루운동 ①월8회 (주2회) ②분기1회 ③연1회 ④연1회 2.수중운동 ①월8회 (주2회) ②분기1회 ③연1회	1~2. 90분	가구특성 적합 입증자료 (예산범위 내에서 1회 재판정) * 동일한 종목에 대한 서비스 이용불가, 즉 마루운동자는 재판정시 반드시 수중운동으로 신청
070101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720	①648 ②576 ③504	①72 ②144 ③216	12개월	6개월 마다	소득기준 없음	(24) 1994 (포함) 이후 출생자	1.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청소년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1. 보조기 대역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역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 서비스(단, 건강보험공단 지원 대상 품목 제외) 2.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외 점검·유지보수 (예: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재가 방문형 (1인)	연중렌탈 및 정기점검 (연 2회) 수시점검 제한없음	제한 없음	장애인등록증 또는 의사소견서 (예산범위 내에서 4회 재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기준 1. 1등급 :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50% 이하 2. 2등급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40% 이하 3. 3등급 : 기준중위소득 140%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 ① 장애등급 순(1급, 2급, 3급 등) ② 소득수준(저소득 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 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 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연중 렌탈 및 점검 (정기점검 : 연2회, 수시점검 : 제한 없음) 4. 서비스 제공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 이용자 상태 파악 및 욕구조사 -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 회수 등 사후관리 				
170203	자녀의 성공을 돕는 부모 코칭 (키울 Mom 난다!)	140	①126 ②120 ③100	①14 ②20 ③40	12개월	1개월 마다	소득기준 없음	제한 없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취학 및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 2. 예비부모 (주민등록상 가족관계 확인가능자, 혼인신고자) 3. 조부모 (조손세대) : 주민등록상 가족관계 확인가능자로 법적 조손가정과, 주민등록상 조부모와 손자녀만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주민등록상 손자녀의 부모가 함께 거주하지 않으면 이용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기준 1. 1등급 : 기초수급자, 차상위, 기준중위소득50% 이하 2. 2등급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20% 이하 3. 3등급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순위 ① 다자녀(3인이상), ② 한부모, ③ 조손세대, ④ 맞벌이, ⑤ 유아 자녀 고연령 순, ⑥ 초등(저학년 순), ⑦ 중등(저학년 순), ⑧ 고등(저학년 순), ⑨ 예비부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달단계에 따른 자녀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행동 이해하기 - 자아존중감, 나와 타인 이해하기 등 배려와 존중이 있는 아이로 키우기 2. 양육스트레스 이해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 감정처리 방법, 긍정적 부모역할 교육 3. 화목한 가족관계 리더되기 4.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관련한 예방교육 (화재, 지진, 응급 재난상황 등) 	기관 방문형 (1~15인)	1~3.월4회 (주1회) 4.연1회	1~3.180분 4.60분	가구특성 적합 입증자료

☞ 서비스 신청관련 주의사항

- ① 연령적용 : 신청 시점 출생연도 기준 적용
- ② 중복이용불가 : 서비스 지원기간 내 동시 이용불가
- ③ 우선순위 일반원칙 : 각 서비스별 상이(서비스별 우선순위 참조)

☞ 서비스 제공 주의사항

- ① 월단위 서비스 총량은 「월 정부지원금」 범위 내에서만 서비스 제공
- ② 기준정보의 횡수와 시간은 반드시 준수해야하며, 기준정보의 내용을 초과하여 서비스 제공시 이용자에게 반드시 별도의 비용 지불받아야 함.

■ 2018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0%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26,000	26,638	4,674	27,563
2인	1,407,000	43,714	18,603	44,329
3인	1,820,000	55,746	36,034	56,367
4인	2,234,000	69,115	59,938	70,038
5인	2,647,000	81,698	81,836	82,550
6인	3,060,000	93,887	99,483	94,981
7인	3,473,000	106,673	117,399	107,451
8인	3,887,000	119,960	135,682	121,620
9인	4,300,000	133,141	151,167	135,080
10인	4,713,000	145,018	163,570	147,189

●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653,000	50,837	28,471	51,436
2인	2,814,000	86,847	89,147	87,915
3인	3,641,000	111,556	124,561	112,929
4인	4,467,000	137,073	155,188	138,870
5인	5,294,000	163,084	182,810	165,762
6인	6,120,000	189,872	210,385	193,438
7인	6,947,000	214,233	236,585	219,758
8인	7,773,000	240,800	261,485	248,972
9인	8,600,000	269,208	288,090	281,298
10인	9,426,000	295,815	312,864	312,298

●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984,000	61,029	43,944	61,200
2인	3,377,000	104,130	113,972	105,337
3인	4,369,000	135,080	153,035	137,073
4인	5,361,000	165,762	185,403	168,468
5인	6,353,000	197,177	218,155	200,907
6인	7,344,000	226,065	247,971	232,910
7인	8,336,000	258,317	278,115	269,208
8인	9,328,000	295,815	312,864	312,298
9인	10,320,000	337,035	349,667	364,337
10인	11,311,000	364,337	368,636	390,656

● 기준중위소득 140%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14,000	71,140	63,978	71,990
2인	3,940,000	121,620	137,459	122,753
3인	5,097,000	157,887	177,655	160,431
4인	6,254,000	193,438	214,178	197,177
5인	7,411,000	232,910	254,377	240,800
6인	8,568,000	269,208	288,090	281,298
7인	9,725,000	312,298	329,212	337,035
8인	10,883,000	337,035	349,667	364,337
9인	12,040,000	390,656	384,842	431,402
10인	13,197,000	431,402	405,835	498,529

●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508,000	79,122	76,097	80,039
2인	4,271,000	133,811	153,025	135,662
3인	5,525,000	173,764	195,109	176,657
4인	6,779,000	214,407	238,237	218,525
5인	8,033,000	258,360	282,164	268,167
6인	9,287,000	291,638	312,942	306,683
7인	10,541,000	352,610	363,427	382,121
8인	11,795,000	382,121	382,610	410,811
9인	13,049,000	410,811	399,121	454,412
10인	14,303,000	454,412	420,433	527,607